

朝鮮外交事務書」解說

<日本外務省編>

「朝鮮外交事務書」(29卷)는 釜山開港(1876年)당시 日本外務省에서 編纂한 日本明治政府의 「對朝鮮 開國外交文書集」으로 原表題는 「朝鮮事務書」로 되어 있으나 外交文書라는 性格을 좀더 浮刻시키기 위해 「朝鮮外交事務書」라고 이름을 붙였다.

「朝鮮外交事務書」(29卷)를 所藏하고 있는 現釜山市立圖書館은 비록 日本人들이 對朝鮮侵略過程에서 그들의 必要에서 設立된 圖書館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가운데서 생긴 近代圖書館 가운데 그 嚆矢를 이루는 것이다. 그 沿革을 보면 1901年 日本弘道會 釜山支會에서 처음 圖書館을 設置하여 運營해 오다가 1911年에 釜山教育會로 引繼되었다. 그後 1919年4月에 釜山府로 移管되어 府費로서 運營하게 됨으로써 公共圖書館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日帝의 對朝鮮侵略過程 가운데 侵略을 하는 日人들의 要請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이라는 設立의 基本性格에 따라 日本側의 貴重한 文獻이 많이 所藏되어있고 또 이러한 文獻 가운데는 아직까지 世에 알려지지 않은 資料가 많이 包含돼 있다. 이러한 貴重文獻資料를 國內外에 紹介하기 위해 3個年計劃으로 釜山市立圖書館所藏 貴重圖書의 解題를 筆者가 釜山市立圖書館으로 부터 委囑받아 이미 2輯을 刊行하여 國內外에 配付하였고 今年 마지막 第3輯을 刊行할 準備를 서둘러 있다.

이러한 貴重圖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서 解說하는 「朝鮮外交事務書」인 것이다.

「朝鮮外交事務書」 29卷의 內容은 1867年으로부터 1874年 즉 日本의 明治維新 前으로부터 1875年 日本이 江華島에서 雲揚號事件을 挑發하던 前年까지의 日本의 對朝鮮 外交關係文獻을 年月日別로 總網羅한 것으로 이期間의 韓·日兩國 現存外交文書中 日本側의 唯一한 完本이 되는 것이다. 日本外務省 用紙에 日本의 가다가나(カタカナ)와 漢文을 混用하여 붓으로 淨書한 筆寫本이다. 冊모양은 日本의 和仙紙를 半折하여 折面에 外務省이라는 붉은 글씨가 들어있고 세로 26.5cm 가로 19cm의 各面을 幅은 줄로써 10間으로 만들어 그곳에 淨書하였는데 누구나 다 알수있도록 特別 妥善하게 楷字로 淨書해 놓았다.

全 29卷의 各卷의 枚數는 100枚 内外로 되어 있는데 年代別로 卷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67年(卷一) 1868年(卷二) 1869(卷三) 1870年(卷四, 卷五, 卷六) 1871年(卷七, 卷八, 卷九, 卷十) 1872年(卷十一, 卷十二, 卷十三, 卷十四, 卷十五, 卷十六, 卷十七, 卷十八) 1873年(卷十九, 卷二十, 卷二十一, 卷二十二, 卷二十三, 卷二十四) 1874年(卷二十五, 卷二十六, 卷二十七, 卷二十八, 卷二十九)

以上 「朝鮮外交事務書」의 年代別 卷數를 통하여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1867年에서 1874年에 걸친 가장 完璧을期한 詳細한 日本의 對朝鮮外交文書인 것이다 이期間의 從來 알려진 對朝鮮外交文書로는 「日本外交文書」와 「對馬島文書」煙山專太郎著의

47 御講等の件 殿原藩知事으로의 指令案을 붙여한 上申書	317
48 大藏省에 대하여 遣算者官祿 其他 支給의 件 照會書	325
49 同件官祿調書	333
50 大藏省에 대하여 同件用金 等の 件 照會書	337
51 殿原藩으로 부터 憲統陸의 字欠書 및 知事官銜名稱等の 件 上申書	343
52 朝鮮派遣者用金の 件 評議書	351
53 大藏省에 대하여 同件의 일을 다시 한 照會書	355
54 神奈川縣에 대하여 佐田白茅外 2人 渡韓에 의해 公信往來의 順序를 命令하는 書	359
55 長崎縣에 대하여 同前	361
56 大阪府에 대하여 同前	361
57 兵庫縣에 대하여 同前	365
58 大阪府 兵庫 長崎兩縣에 대하여 同件渡航中 石炭缺乏 其他 派遣者로부터 말이 있을 때에는 이를 用辯하고 代價는 本省에 申告할 것을 命令하는 書	367
59 大藏省에 대하여 佐田白茅等 在韓中 探索을 위해 쓰는 附答品 携帶의 件 評議書	371
60 佐田白茅等 渡韓에 따른 船賃 및 旅費等の 件 照會書	373
61 七條史生 本省에 있어서 朝鮮事務調辦한 條 評議書	379
62 大藏省에 佐田白茅等 旅費等の 件 照會書	381
63 神奈川縣에 대하여 佐田白茅等 乘船의 次第 및 旅亭의 일 支障 없기를 命令하는 書	337
64 殿原藩으로 부터 朝鮮往復書翰中 知事稱名の 件 上申書	389
65 殿原藩에 대하여 本省官員探索을 위해 渡韓함에 따라 協力해야 될 뜻을 命令하는 書를 붙인 評議書	393
66 神奈川 長崎兩縣에 대하여 森山少錄 앞으로 公信送達을 依頼하는 書	397
67 靜岡藩으로 부터 朝鮮關係의 書籍 7部를 내 놓은 書	399
68 佐田白茅外 貳人으로 부터 長崎縣에 있어서 異宗徒處置의 情態를 上申하는 書	403

69 宮本權少丞 朝鮮尋交의 件 論書	409
高宗七年 庚午(1870年) 自一月至七月(朝鮮事務書卷之四)	
70 佐田白茅等 對州에 대하여 到省의 上報	437
71 本省으로 부터 齊藤榮 拜借地返納延期의 件 東京府로 的 照會書	439
72 同件 東京府로 부터의 返書	441
73 佐田白茅等 草梁館에 到着한 報告	443
74 同人皇使를 派遣하여 韓을 征하는 議를 獻하는 書	447
75 森山茂 大使를 朝鮮에 派遣하는 議를 獻하는 書	455
76 齊藤榮 皇使를 朝鮮에 派遣하는 議를 獻하는 書	467
77 森山茂 齊藤榮으로 부터 朝鮮尋交商量中 本官의 名稱을 廢하고 出仕로 補할 것을 請하는 書	475
78 朝鮮國王 李氏創業後 비로소 書翰을 보내오는等 考證을 存하는 書	477
79 宗氏山口藩士와 의논하여 朝鮮의 貿易을 圖謀하는等 內密風聞書	515
80 宗氏 韓國輸出入品 運上規則書	519
81 對州藩計調書	527
82 同件處分の 概見書	535
83 濟州物産等調書	543
84 竹島調書	549
85 靜岡藩에 대하여 朝鮮國王으로 부터 從前 보내온 바의 書翰을 낼 것을 命令하는 書	553
86 殿原藩으로 부터 東萊府使가 낸 單翰을 添附하여, 處分을 바라는 書 附: 東萊府使로 부터 正規에 反할 때에는 接待하지 말라는 뜻을 表하는 書	555
87 殿原藩知事에게 東萊府使의 書翰等은 速히 보낼 것을 命令하는 書	563
88 國使를 朝鮮에 派遣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議案	565
89 佐田白茅等으로 부터 殿原藩에 대하여 東萊府使의 書翰을 迅速히 낼 것을 殿督하는 建議	567
90 殿原藩公用人으로 부터 知事로 的 指令書 急便으로써 差送할 뜻의 上申書	571
91 殿原藩知事로 부터 東萊府使 書翰遲延의 件 上申書	573

合サス候故夫ヨリ以前ハ何ハ詮議セ無之候処ニ
 或時伯州ノ獵船竹島ノ船ヲ掛ケ早速大筒ヲ打放
 シ候テ船ヨリ揚リ申候尤船ヨリ上リ候テ大筒
 ヲ打候ハハ島ハ内ヨリ大筒ヲ打合ヲセテ申候
 此趣ハ竹島ヲ朝鮮ニテハ鬱凌島ト申テ本ヨリ朝
 鮮ハ内ナリ依之朝鮮ノ獵師共寄ニ申候ハ何物欵
 我國ノ鬱凌島ノ参リ獵仕候参リ候ハ、參メ可申
 手組ニテ態仕攝居申折柄右ノ通日本ヨリ銃炮
 ヲ打候故合マ申候左候テ左右ノ者共出合日本ノ
 島ト云朝鮮ノ島ト云々論議埒明不申ニ付伯州ヨ

ハ江戸ノ許有之候依之江戸ヨリ對馬ノ被仰甘朝
 鮮ノ申参リ候ハ此以來ハ其方ヨリ日本ノ竹島ノ
 参リ不申様ニト儀朝鮮人ノ圓義引不仕段ニ掛
 合有之江戸ノモ委細注進仕候兎爾箇様ニテハ不
 相濟儀ト對馬殿ヨリ朝鮮ノ申参リ候ニ付漸半合
 點ノ様子ニ相成朝鮮ヨリノ申分ノ書通ニ我國ノ
 鬱凌島ノ一切人ノ不参様ニト申付候我國ノ鬱凌島
 ノサノ人ノ不遣儀ニ候ハハ况ヨリ相ノ竹島ノ可参様
 無之候左様心得候ハト儀ニ候對馬ヨリ江戸ノ
 不伺直ニ返答被申達候ハ是ハ一島ヲ二名ニ仕テ

